

2024년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육성사업 신청 안내

2023. 5. 2.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2024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모집

- '23년 5월 31일 까지 시·군·구에 신청 -

모집 규모

1만 ha(150개소 내외)

신청 기간/장소

'23. 5. 15 ~ 31
시·군·구 농정부서

신청 자격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신청 요건

- ① '23년도 가루쌀 생산단지(38개소)
 - 15ha 이상 확대, 시설·장비 지원 경영체는 30ha 이상 확대
- ② 식량작물공동(들넉)경영체(예비 포함)
 - '24년도 30ha 이상 가루쌀 재배 계획이 있는 경영체
- ③ 신규 생산단지
 - '24년도 30ha 이상 가루쌀 재배단지 조성 계획이 있는 경영체
 - * 벼 재배면적 3천ha 미만 시·군은 20ha 이상이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① 교육·컨설팅 지원
- ② 시설·장비 지원
- ③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 ④ 생산량 전량 정부매입
- ⑤ 맞춤형 생산기술지원
- ⑥ 종자(바로미2) 공급

1 개요

□ 정의·목적

- (정의) 다수의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 일정 규모 이상을 집단화하여 공동으로 경작·경영하는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 (목적) 공동경영 체계를 갖추고 품질·생산성을 높여 가루쌀 소비자(식품기업 등)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 추진 경과

-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수립('22.6)
 - '23년도에 가루쌀 2,000ha(1만톤 생산)
- 분질미 생산단지 조성 계획 수립('22.8월)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중심으로 50ha 이상 재배단지 모집
 - * 40개소(3,316ha) 신청, '23년 최종 38개소(2,000ha) 운영
-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시행지침 확정('22.12)
 - 생산단지별 가루쌀 재배면적 배정(기본 45ha, 대규모 70ha 기준)
 - 가루쌀 생산단지 운영주체에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등 지원
- 단지별 종자 배정 및 현장기술지원단 설치('23.2월)
 - 현장기술지원단, 컨설턴트 등 재배기술 교육 실시(3~4월)
- '24년도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육성 사업 권역별 설명회(4월)

□ 추진 목표 : '26년까지 42.1천ha(생산단지 300개소 내외 조성)

- ('23) 2천ha/38개소 → ('24) 10/150 → ('25) 15.8/200 → ('26~) 42.1/300

2 생산단지 모집 계획

□ (모집 규모) 재배면적 10천ha(생산단지 운영주체 150개소 내외)

- (신규) '24년도 단지별 참여 농업인 10명 이상, 가루쌀 30ha 이상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영체(110개소 내외)
- (기존) '23년도 가루쌀 생산단지(38개소)는 단지별 재배면적을 확대

□ (모집 기간) '23.5.31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신청 자격) 농협(지역농협, 조공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23년도 가루쌀 생산단지는 '24년 가루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26년까지 목표 면적과 로드맵을 제출
-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 가루쌀 재배면적 30ha 이상
 - * (인정요건) 공동경영면적 50ha 이상, 참여경영체 25인 이상, 집적화
 - *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예비)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포함
- 일반 생산단지 : '24년 가루쌀 재배 농업인 10인 이상, 재배면적 30ha 이상
 - * 벼 재배면적이 3천ha 미만인 시군은 (교육·컨설팅) 20ha 이상, (시설·장비) 40ha 이상

<자격 제한>

-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 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최대 출자자·임원 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사업에서 제외

3

생산단지 지원

□ (교육·컨설팅) 가루쌀 재배 확대,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 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경영체당 30백만원, 사업기간 1년, 총 3회까지 지원

- 생산단지별 컨설팅기관은 지자체별로 통합 관리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교육비) 가루쌀 및 동계작물 재배교육,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작부체계 전환, 발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친환경·저탄소 인증 취득, 가루쌀 순도분석 비용, 선진지 견학 등

■ (컨설팅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 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등

□ (시설·장비)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가루쌀 재배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공동육묘장 및 트랙터(부속작업기 포함)·이앙기·방제기·콤바인 등

* 공동육묘장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사업다각화 지원 건축물 기준 준용

* 동계작물(밀·보리·조사료 등)과의 연계 등 경영체의 작부체계 특성에 따라 동계작물 파종기·수확기(조사료(건초) 수확장비 등) 등 제한적으로 일부 포함 가능

○ 경영체당 1 ~ 5억원 이내, 사업기간 1 ~ 2년, 총 2회까지 지원

* 총 사업비와 연차별 지원금액은 사업계획 및 준비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추가 지원

- (현장기술지원) 파종·육묘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단지별 맞춤 지원
- (전략작물직불금) 100만원/ha 지원(밀 등과 이모작 시 250만원)
 - * 직불금 인상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예정
- (수요처 확보) 가루쌀 가공분야(제면, 제빵, 소재 등) 수요 창출을 위해 농가 희망량 전량 정부 매입('24년까지 확정, '25년 추가 검토)
- (기타) 가루쌀을 활용한 지역 중심의 복합산업화 지원 검토
 - * 가공·유통·서비스 등 사업 발굴·확장 시 시설비, 마케팅비 등 지원

□ 사업별 지원 요건(재배면적 단계적 확대)

- 교육·컨설팅 지원
 - '23년 생산단지는 '24년에 전년 대비 최소 15ha 이상 확대하고, '26년까지 목표 달성 계획 제출
 - '24년도 신규 생산단지는 가루쌀을 30ha 이상을 재배하고, '26년까지 연차별 확대 계획 제출
 - * (예시) '24년 30ha → '25년 80 → '26년 이후 150
- 시설·장비 지원
 - '23년도 시설·장비 지원을 받은 생산단지는 '24년에 전년 대비 최소 30ha 이상 확대하고 '26년까지 200ha 이상 재배 로드맵 제출
 - '24년도 신규 생산단지는 '26년까지 150ha 이상으로 면적 확대
 - * 벼 재배면적이 3천ha 미만인 시군은 '26년까지 80ha 이상으로 면적 확대

4 행정사항

- 신청서를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5.31까지)
 - * (경영체→시군구) 5.31까지 → (시군구→도) 6.30 → (도→농식품부) 7.31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가루쌀 생산단지조성 사업 신청서(기존, 신규)							
신청인	경영체명				법인번호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농협조직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조직유형	<input type="checkbox"/> 식량작물공동경영체 <input type="checkbox"/> 가루쌀 생산단지(운영주체)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공동경영현황	참여 농가수			재배면적(ha)		
	이모작	동계 하계		품목/면적 기재 품목/면적 기재			
가루쌀 단지조성 계획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재배면적						
	참여농가수						
사업 신청	총사업비 (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input type="checkbox"/> 교육 컨설팅 지원						
	<input type="checkbox"/> 시설·장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붙임	1. 사업계획서		2. '24년 가루쌀 재배 농가 및 면적				
	3. 평가 증빙 자료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 및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보조 및 예산 집행, 교육 홍보, 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의무이행)	5년 (말소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 및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보조 및 예산 집행, 교육 홍보,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의무이행)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칭

수립 2000년 00월 00일

1차 수정 2000년 00월 00일

2차 수정 2000년 00월 00일

0000법인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의사항

● 공통사항

- 구비서류는 구비서류의 목록에 있는 번호와 제목 그대로 적용하여 각각의 PDF파일로 작성하고, 1개의 폴더로 만들어 압축하여 제출
- 모든 값은 면적 기준으로 작성(중량으로 작성시 면적으로 환산 기준 명시할 것)
- 구비서류에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불인정
- 2022년 기준 현황을 작성
 - ※ 출자액, 출자자수, 참여농가 수, 공동경영면적, 재해보험가입현황, GAP, 친환경 인증현황 등의 작성내용은 구비서류 내용과 일치해야 함(구비서류가 없거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불인정)

□ 주요 누락되는 구비서류

- 참여농가 명부, 공동영농 농지현황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출자내역 포함, 농협 제외)
- 재해보험 가입현황, GAP 생산단지 지정서 및 친환경 인증서

※ 합계가 필요한 구비서류는 첫 페이지에 총괄표를 작성하여 제출
예시) 공동영농 농지현황, 또는 계약재배, 재해보험 가입면적 등

연번	성명	필지주소	면적(m ²)	비고
1	김아무개	○○시 ○○면 ○리 15번지	1,000	
2	이아무개		2,000	
3	박아무개		3,000	
4	최아무개		4,000	
합계			10,000	

목 차

I. 경영체 현황	0
1. 기본 현황	0
2. 공동경영 조직현황	0
3. 공동경영체 운영현황	0
4. 공동경영체 운영성과	0
II. 가루쌀 생산단지 운영 계획	0
1. 공동경영체 육성 계획	0
2. 가루쌀 재배계획	0
III. 교육 컨설팅 추진 계획	0
1. 추진 현황	0
2. 교육·컨설팅 사업 세부추진계획	0
3. 사업비 확보 계획	0
IV. 기대효과	0

공동경영 기본현황(농업법인) *농협은 삭제

구분		현황						
참여농가 수		총 00명(법인 출자자 00명, 비출자자 00명) *법인출자자 수 비율(%)						
공동경영면적 (a)		총 00ha (논 00ha, 밭 00ha)	출자자 면적(b) 비출자자 면적	총 00ha(논 00ha, 밭 00ha) 총 00ha(논 00ha, 밭 00ha)	*법인출자자 면적 비율(a/b) (%)			
재배 현황	하계	품목(품종, 품종), 품목(품종, 품종)						
	동계	품목(품종, 품종), 품목(품종, 품종)						
인증면적(ha)		계	GAP	무농약	유기농	재해보험 가입	농가수(명)	면적(ha)
식량작물사업 지원 이력		교육컨설팅	'00년 00백만원, '00년 00백만원					
		시설장비	'00년 000백만원, '00년 000백만원					
		사업다각화	'00년 000백만원,					
재배단지 지적도		*분포유형: 집단화 단지형(평야지 50ha이상, 산간지 30ha이상) ()ha, 분산형(4ha이상) ()개						
		* 항공사진(위성사진)에 단지 경계선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기						

공동경영 기본현황(농협) *농업법인은 삭제

구분		현황						
참여농가 수		총 00명(식량작물재배 조합원 수 명) *참여농가 수 비율(%)						
공동경영면적 (a)		총 00ha (논 00ha, 밭 00ha)	조합원 식량작물 총 재배면적(b)	총 00ha (논 00ha, 밭 00ha)	*공동경영면적 비율(a/b) (%)			
재배 현황	하계	품목(품종, 품종), 품목(품종, 품종)						
	동계	품목(품종, 품종), 품목(품종, 품종)						
인증면적(ha)		계	GAP	무농약	유기농	재해보험 가입	농가수(명)	면적(ha)
식량작물사업 지원 이력		교육컨설팅	'00년 00백만원, '00년 00백만원					
		시설장비	'00년 000백만원, '00년 000백만원					
		사업다각화	'00년 000백만원,					
재배단지 지적도		*분포유형: 집단화 단지형(평야지 50ha이상, 산간지 30ha이상) ()ha, 분산형(4ha이상) ()개						
		* 항공사진(위성사진)에 단지 경계선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기						

* 명과 호는 동일한 단위로 사용

* 농협소속의 별도 식량작물공동경영체가 있는 경우 : 총 공동경영면적(ha)

2. 공동경영 조직현황(2022년)

공동경영 조직구성 현황

구분	구성원
공동경영체	참여(회원)농가 수 : 총 00명(출자자 00명, 비출자자 00명)
운영위원 (총 0명)	위원장(성명), 총무(성명), 재무(성명), 감사(,) 그 외 운영위원 (, ,)
공동영농단	단장(성명), 품질관리담당(성명 ,), 영농기술지도담당(성명 ,) 공동농기계운영(,)
[000 공동경영체 운영조직도]	

- * 운영위원 : 법인(농협) 이사회와 구별되는 공동경영체 운영위원(법인/농협 이사 중 겸직자가 있을 수 있음)
- * 운영위원장 : 운영위원회 대표자(법인 대표가 겸직할 수 있음, 농협장은 참여농가가 아닌 경우 겸직 불가)
- * 운영조직은 공동경영체 운영방식(직책 등)에 따라 구성할 수 있음(단, 공동영농단은 의무적으로 구성)

공동경영체 조직관리 현황

구분	관리현황			비고			
공동경영체 운영규칙	수립·시행	여	부	(여) 0000년 0월부터 수립·시행			
공동경영체 재무장부	기록·관리	여	부	(여) 0000년 0월부터 기록·관리			
공동영농 관리 (여 O, 부 X)	파종·육묘	이양	방제	수확	건조	출하	

□ 시설·장비 보유·운영 현황

○ 법인 운영 시설·장비 보유현황

구분	시설명	설치년도	건축면적	건축형태	주요시설내역 (처리능력 등)		투자금액 (백만원)	비고
시설	육묘장							
	건조시설							
	가공시설							
	저장시설							
구분	장비명	출고년도	도입년도	제작회사	성능규격	처리면적 (ha)/8시간	투자금액 (천원)	
장비	콤바인(1)							
	콤바인(2)							
	트랙터							
	파종기							
	수확기							

- * 법인 : 소유(자산) 및 자본(출자)형태의 시설·장비(조직원농가 소유 시설·장비 제외)
- * 농협 : 공동경영체 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 * 동일한 장비를 복수로 보유한 경우 (1), (2) 등 번호 기재
- * 성능규격 : 마력(hp) 등 장비(또는 매뉴얼)에 기재된 성능규격
- * 시간당 처리능력 측정이 어려운 시설장비는 별도 기준 사용(단, 처리면적은 반드시 기재)

○ 참여(조직원)농가 보유 장비 운영현황

장비	소유자	가동능력		작업면적(ha)		장비	소유자	가동능력		작업면적(ha)	
		hp	ha/8h	자경	대행			hp	ha/8h	자경	대행
이앙기											
파종기											
살포기											
드론											
무인헬기											
콤바인											
트랙터											

* 가동능력 : hp(마력 또는 장비별 능력), ha/8h(8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면적)

○ 공동경영체 평균 농작업료 현황(2022년, 인건비 포함)

트랙터(천원/ha), 이앙기(천원/ha), 콤바인(천원/ha)

공동경영체 재배면적(품목별 및 용도별)

* 재배작물명 및 면적을 정확히 기재(IV.기대효과 1. 정량적 성과지표와 일치해야함)

(단위 : ha)

구분	품목명		합계	고품질 (일반)	친환경	GAP	가공용	수출용	특수용 ()
'21년	하계 ('21)	일반쌀	0						
		(타 작물명)	0						
		(타 작물명)	0						
	동계 ('21~'22)	(동계 작물명)	0						
		(동계 작물명)	0						
'22년	하계 ('22)	일반쌀	0						
		(타 작물명)	0						
		(타 작물명)	0						
	동계 ('22~'23)	(동계 작물명)	0						
		(동계 작물명)	0						
'23년 (계획)	하계 ('23)	일반쌀	0						
		가루쌀	0						
		(타 작물명)	0						
	동계 ('23~'24)	(동계 작물명)	0						
		(동계 작물명)	0						

*논 이모작/타작물 재배현황

논면적(A)		하계 타작물면적(B)		동계 작물면적(C)		비율(%)			
'22년(a2)	'23년(a3)	'22년(b2)	'23년(b3)	'21~'22년(c2)	'22~'23년(c3)	b2/a2	b3/a3	c2/a2	c3/a3

공동경영체 가축 사육 및 관련 정책지원 현황

○ 공동경영체 조직원 농가 가축사육 현황('23.2.기준)

한우사육		젓소사육		돼지사육		닭/오리 사육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마릿수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 경축순환농업의 도입 및 이용실태(실시하는 경우 작성)

○ 경축순환형태 : 면적 ha, 농가수 호, ○ 생산형태 : 퇴구비 톤, 액비 톤

○ '경축순환' 관련 사업 지원이력

사업명	지원년도				
지원내용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기타

3. 공동경영체 운영 현황(2022년)

공동영농 현황

구분	공동영농 작업	공동경영체 참여농가		공동영농 참여농가			
		농가수(a) (호)	면적(b) (ha)	참여농가 수(명)		참여 면적(ha)	
				참여농가수(c)	참여비율(c/a)	참여면적(d)	참여비율(d/b)
과종	과종				%		%
	육묘						
	이양						
재배	시비						
	방제						
수확 출하	수확						
	건조						
	출하 (공동판매)						

*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와 공동영농 참여농가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명확하게 기재

공동육묘 운영현황

○ 공동육묘 시행방법('22년 운영결과 기준)

형 태	실시여부	참여농가(수) 비율				
		전원	75%이상	50%~75%	25~50%	25%이하
공동육묘장 설치·운영(직영)						
지자체 공동육묘장 이용						
농협 공동육묘장 이용						
기타 육묘장 이용						
공동육묘 실시 없음						

* 실시여부 : 해당 형태의 실시(여) 또는 (부) *조직원 농가참여비율 : 해당 난에 ○ 표

* 복수의 형태를 활용하는 경우 : 각 형태의 참여비율 기재

○ 공동육묘장 운영현황(육묘장 설치·운영 공동경영체, '23.2.기준)

운영주체	00농협, 00법인	공동육묘장 규모		총 동, m ²				
육묘장 형태		육묘능력		장/년	시작년도	년		
공동육묘장 부대시설	모판상자수(상자), 지게차(대), 온탕기(대), 파종기(대), 육묘대(층 대, 형태)							
운영실적 ('22)	매출액(천원)				비용(천원)			
	수량	단가	기타판매	매출합계	자재비	인건비	기타비용	비용합계

* 공동육묘장 활용(계획) : 농기계·농자재 보관, 타작물재배, 농산물건조, 체험공간, 기타활용, 활용안함 등

○ 지자체 보조사업('22년) : 지원사업명, 금액 기재

공동방제 운영현황

○ 공동방제 시행방법('22년 운영결과 기준)

형 태	실시여부	참여농가(수) 비율				
		전원	75%이상	50%~75%	25~50%	25%이하
공동경영체 방제장비						
농협 방제장비(지원)						
지자체 방제장비(지원)						
기타 공동방제						
공동방제 실시 없음						

* 실시여부 : 해당 형태의 실시(여) 또는 (부) *조직원 농가참여비율 : 해당 난에 ○ 표
* 복수의 형태를 활용하는 경우 : 각 형태의 참여비율 기재

○ 공동방제장비 운영현황(장비 보유·운영 공동경영체, '23.2.기준)

운영주체	00농협, 00법인	공동방제장비 현황		
공동방제능력	ha(공동경영체 방제 ha, 임대 방제 ha)		시작년도	년
방제기 운영	○운영인력(명), ○면허보유인력(명)/ ○부대장비 : ○방제기 운영방법 :			

* 방제기 활용(계획) : 공동방제, 산림방제, 종자파종, 기타
○지자체 보조사업('22년) : 지원사업명, 금액 기재

공동영농 운영현황

○ 공동영농 관리운영규칙('22년 운영결과 기준)

항 목	수립여부	관리규칙 운영실태		
		체계적 운영	운영미흡	운영부진
재배매뉴얼				
품질관리 매뉴얼				
출하·판매·정산 등 규칙				
수익금 관리규칙				

* (체계적 운영) 매뉴얼 철저히준수, (운영미흡) 참여농가 50%이상 이행·준수, (운영부진) 참여농가 50%미만 이행

○ 공동영농활동 수익금 관리현황

공동영농활동 내용	활동기간	손익현황 (수익금)	수익(이익)금 사용결과			
			사용형태	사용금액	사용대상	사용기간

* 활동기간 : 시작년도부터 `22년까지(최소한 `22년 1년 기간 기재)
* 사용형태 : 조직운영(사무장비), 재투자(시설 개보수, 장비 수리·구입 등), 교육(직원, 조직원농가) 농자재 지원, 배당(조직원농가 배당), 기타(조직원농가 의사결정에 따른 방법)
* 증빙자료(제출서류)가 있는 경우만 인정함(증빙이 없는 기재내역은 불인정 또는 감점 페널티 부여)

4. 공동경영체 운영성과

* 본 사업을 1차(처음) 신청하는 공동경영체는 작성하지 않음

가.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이력

사업구분	지원사업 기간	사업금액 (천원)	주요 사업내용
교육·컨설팅	2019년	30,000	리더교육, 조직화교육
시설·장비			

나. 공동경영체 사업성과(사업지원 전·후)

성과항목		지원 이전 (2000년)	지원 이후 (2000년)	비고(특기사항)	
공동 경영체	참여농가 수(호)				
	공동경영체 재배면적(a)(ha)				
	법인 출자자 수(명)				
	법인 자본금(출자금)(천원)				
	법인 자산(천원)				
공동 영농	공동영농 면적(b)(ha)				
	공동영농 비율(b/a) (면적기준)	과종단계(%)			
		재배단계(%)			
		수확출하단계(%)			
	단수 (톤/10a)	00품목(톤)			
		00품목(톤)			
생산비 (천원/10a)	00품목(톤)				
	00품목(톤)				
기타	재해보험가입 농가수(호)				

* 지원이전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최초사업 이전년도(또는 최초사업 시행년도)

* 지원이후 : 본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이전 년도

* 단수/생산비 품목 : 2개 이상의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대표품목 2개 선정 및 작성

II

가루쌀 생산단지 운영 계획

1. 공동경영체 육성 계획

공동 경영규모

	참여 농가수 (호)	공동경영체 재배면적(ha)			비고
		계	논	밭	
2023년(현재a)					
2024년					
2025년					
2026년(b)					
증감(b-a/a)					

사업다각화 등

- 가공, 유통, 체험 등 발전방향을 간략히 기재

공동경영체 운영 활성화 계획

- 운영위원회, 총회 등 주요 의사결정 회의 운영 계획
- 공동경영체 운영규칙,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규칙, 공동영농장비 운영관리 규칙, 재무관리 등의 수립, 정비, 운영 활성화 방안
- 공동경영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활동

협력 네트워킹 활성화 계획

- 관련 단체, 협회 등의 가입 및 활용
- 공동경영체와의 교류 활동(경험 사례 벤치마킹, 공동구매, 공동이용 등)

2. 가루쌀 재배 계획

가루쌀 재배 계획

	하 계(ha)				동 계(ha)			
	가루쌀	품목명	품목명	계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계
2023년(현재a)								
2024년								
2025년								
2026년(b)								
증감(b-a/a)								

* 통계작물(년도) : 파종일 기준(예) 2024년은 `24 하반기 ~`25년 상반기임

가루쌀 공동영농계획(향후 3년)

공동영농 작업	공동영농현황				공동영농계획			
	2022년(실적)		2023년(계획)		2024년		2026년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파종, 육묘	(%)	(%)	(%)	(%)	(%)	(%)	(%)	(%)
이앙	(%)	(%)	(%)	(%)	(%)	(%)	(%)	(%)
재배 (방제, 시비)	(%)	(%)	(%)	(%)	(%)	(%)	(%)	(%)
수확	(%)	(%)	(%)	(%)	(%)	(%)	(%)	(%)
건조	(%)	(%)	(%)	(%)	(%)	(%)	(%)	(%)
출하 (판매)	(%)	(%)	(%)	(%)	(%)	(%)	(%)	(%)

* (%)참여율 : 공동경영체 농가수 및 면적(현재 및 계획 년도별) 대비 공동영농(농작업별) 참여농가 수 및 면적 비율

공동영농장비 운영계획

○ 공동영농장비 운영현황('23.2. 기준)

보유·운영 장비명	사용용도	운영 현황		장비 과부족	
		처리능력 (ha)/8h	처리면적 (ha)	장비 필요면적(ha)	장비 과부족 면적(ha)
콤바인(1)					(부) 10ha
콤바인(2)					
파종기					(과) 10ha

- * 처리능력 : 8시간(일) 기준, 작업가능 면적(면적(ha)/8시간)(동일 장비를 복수로 보유한 경우 해당 평균치)
- * 시간당 처리능력 측정이 어려운 장비는 별도 기준 사용(단, 처리면적은 반드시 기재)
- * 공동경영체 시설·장비 보유·운영 현황과 동일해야함(장비명과 장비별 번호 일치)

- 공동경영체 시설장비 보유·운영 실태 진단분석

- * 공동경영체 보유·운영 영농장비 및 참여농가 보유·운영 영농장비를 모두 고려하여 공동경영체의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 보유·운영 실태를 진단분석
- *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자는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필요시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자문)

- 공동경영체 영농장비 임대 사용 여건 진단분석

- * 공동경영체가 위치한 시군, 지역농협 등의 영농장비 임대사업 여건도 연계하여 진단분석

○ 공동영농장비 폐기(또는 판매) 계획('26년까지)

폐기/교체 대상 장비명	기존장비 폐기/판매 계획					폐기/판매 사유	장비 필요면적 (ha)	폐기/판매 후 장비 과부족 면적(ha)
	출고 년도	도입 년도	교체 /판매	처리능력 (ha)/8h	처리 면적(ha)			
콤바인(1)			폐기					
콤바인(2)			판매					
파종기								

- * 폐기 : 사용불능으로 폐기 처리 *판매: 사용 가능 중고품으로 판매 처리
- * 시간당 처리능력 측정이 어려운 장비는 별도 기준 사용(단, 처리면적은 반드시 기재)
- * 공동경영체 시설·장비 보유·운영 현황과 연계(장비명과 장비별 번호 일치)
- * 장비 필요면적, 폐기/판매 후 장비 과부족 면적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

○ 공동영농장비 확보 계획('26년까지)

도입장비명	사용용도	확보계획 연도	성능규격	처리능력 (ha)/8시간	확보 후 장비 과부족 면적 '26년기준 (ha)

공동영농장비 운영관리 계획

○ 공동영농장비 운영관리 계획

- 운영일지, 정기점검, 등 운영 체계화 계획 등
- 공동영농장비 운영비용 관리 계획
 - 농작업 대행 비용단가 기준, 비용납부 대상, 방법, 관리방안 등
- 공동농작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금의 처리방안
 - * 공동영농장비 운영과 연계된 농작업 비용은 법인 구좌를 통해 수입·지출 되어야함(개별 지급방식 불인정)
 - * 공동경영체 농작업에 따른 손익처리 방법(공동경영체 참여농가들의 의견 반영 방안)

-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 계획
 - 공동영농 작업을 위한 품질관리, 생산관리, 출하관리, 영농장비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및 전문성 향상 추진 계획

Ⅲ

공동경영체 발전 추진계획

1. 교육·컨설팅 추진계획

추진현황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횟수 : 본 계획 회차(기존 회 실시)
- 교육·컨설팅 업체명(진행 또는 계획) :

교육·컨설팅 사업 세부 추진계획

구분	주요 항목	주요 내용	금액(천원)	기간
교육				
컨설팅				

*주요 항목은 교육컨설팅 매뉴얼을 준수하되, 필요시 창의적인 교육내용 일부 실시 가능

2. 시설·장비 추진계획

*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사업자 작성(교육컨설팅만 신청하는 경우 생략 가능)

시설·장비 도입 추진계획('26년 공동경영체 계획면적 기준)

○ 공동영농계획

	벼		가루쌀		기타 하계작물		동계작물	
	2023	2026	2023	2024	2023	2026	2024	2026
면적(ha)								

* 앞의 관련 계획 항목들과 일치해야함 *(유의)계획 면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페널티 부과

○ 공동영농 시설·장비 도입계획('26년 계획 기준)

시설·장비명	기존장비 과부족 면적(ha)	폐기/판매 후 과부족 면적(ha)	도입 계획 장비		도입 후 과부족 면적(ha)
			성능규격	처리능력(ha)/8시간	

* 성능규격 : 해당 장비에 기재된 성능규격(마력 hp 등)

○ 도입 시설·장비 세부내역

시설·장비명	공급(제작)업체명	성능 규격	처리능력 (ha)/8시간	도입금액(천원) (세부 내역 및 금액)	비고
콤바인(1)					
	최저가격	-	-		
콤바인(2)					
	최저가격	-	-		
	최저가격	-	-		
합 계(최저가격의 합계)					

- *공동영농 시설·장비 도입계획과 연계해야함
- *동일 장비에 대해서 3개 업체이상 모델 제시(동일 장비를 복수로 도입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기재)
- *성능규격 : 해당 장비에 기재된 성능규격(마력 hp 등)
- *최저가격 : 3개 업체 기적 중 최저가격 기재
- *견적서(첨부) : 공급업체 견적서에 성능규격, 처리능력, 세부 금액 등 필수 기재

사업 부지확보 현황(육묘장에 한함)

○ 부지 확보여부 : 확보완료, 확보 중(가등기)

* 부지 확보 증빙자료 첨부

○ 부지면적 : m²(평)

○ 위치(주소) :

○ 부지의 특성 : 물류, 교통, 제약요인, 강점, 기존시설, 주변시설 등 부지의 특성 세부 분석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

○ 사업부지의 규제검토결과 * 건폐율, 용적율, 제한사항(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검토항목	규제사항 검토결과	비고
검토기관/ 기간		
용도지역		
농지(산지)		
도로하천		
환경·문화재		
자연재해		
기타		

□ 사업추진 일정 계획

구분	사업신청년도(2023년)							사업추진년도(2024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추진의사결정																			
이사회																			
총회																			
행정업무 추진사항																			
세부시행계획서																			
일상감사																			
보조금교부결정																			
사업비 정산																			
시행업체 선정 및 계약																			
시행업체 선정입찰																			
시행업체 선정계약																			
사업시행																			
교육 및 컨설팅																			
시설설치																			
장비납품																			
시험운행 및 검수																			
기타																			

3. 사업비 확보 계획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지방비 확보 추진 현황

*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

○ 지방비 확보 향후 추진 계획

*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향후 추진 계획

* 지자체 관련 방침 문서(시장·군수 결재 사본, 예산부서 협조), 지자체 의회 설명 근거 및 동의(협조) 문서 등

자부담금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이사회 의결서(서명 및 직인) 및 출자협약서(협약 참여자 서명) 등 제출

○ 자부담금 확보 계획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기 확보	계획
합 계		합 계		
○부지매입		○자부담		
		- 출자액(자본금)		
○부지조성공사		- 이익잉여금		
		- 신규출자		
○설치사업비		- 기타		
		○보조금		

○ 자부담 확보 추진 현황

-

○ 자부담 확보 향후 추진 계획

-

IV	사업 기대효과
-----------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모두 작성

정량적 성과지표

구분	추진계획					
	농가수(호)	공동경영면적(ha)	답리작(ha)	타작물(ha)	출자자수(호)	매출액(백만원)
2023년(A)						
2024년						
2025년						
2026년(B)						
증감% (B-A)/A						

* 공동농작업을 증대(%), GAP·친환경 인증 증가, 일자리 창출효과, 방문객 수 등 작성 가능

정성적 기대효과(정량적 성과지표 이외)

○ 생산부문

-

○ 가공부문

-

○ 유통부문

-

○ 기타

-

<덧붙임>

지역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현황(지자체가 작성)

1. 지역(시·군) 식량작물 생산 현황

재배면적

(단위 : ha, %)

구 분			2017(a)	2018	2020	2021	2022(b)	증감(b/a-1)
논 총면적(a) (ha)								
논 타작물 (ha)	하 계	품목명						
		소계(c)						
	동 계	품목명						
		소계(d)						
비율 (%)	하계작물(c/a)	%	%	%	%	%	(b-a)%p	
	동계작물(d/a)	%	%	%	%	%	(b-a)%p	
주요 밭작물 (ha)								

생산량

(단위 : 톤, %)

구 분			2017(a)	2018	2020	2021	2022(b)	증감(b/a-1)
논 총면적(a) (ha)								
논 타작물 (ha)	하 계	품목명						
		소계(c)						
	동 계	품목명						
		소계(d)						
주요 밭작물 (ha)								

2. 지역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현황

*2022년까지 지원사업자가 없는 시군은 '지원사업자 없음' 으로 기재

육성지원 개소수

(단위 : 개소)

구분		2019까지	2018	2020	2021	2022	합계
교육 컨설팅	들 녘				3(1)		10(4)
	논타작물						
시설장비	들 녘						
	논타작물						
사업 다각화	들 녘						
	논타작물						

* () : 2회 지원을 받은 개소수 별도 기재/ (예시) `21년 3(1) : `21년에 총 3개소 육성지원, 이중 1개소는 2회 지원 공동경영체(`21년 이전 지원받은 공동경영체)/ *(예시) 합계 : 총 10개소, 이중 4개소는 2회 지원받음

*동일한 공동경영체가 3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에 표기하되, 표 주에 별도 기재

공동경영체 재배면적

(단위 : ha, %)

구분		2019(a)	2018	2020	2021	2022(b)	증감(b/a-1)
교육 컨설팅	들 녘						
	논타작물						
시설장비	들 녘						
	논타작물						
사업 다각화	들 녘						
	논타작물						
합계	들 녘						
	논타작물						

*각 년도 합계, *공동경영체의 년도별 실제 재배면적(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면적 아님)

공동경영체 지원금액(자부담 포함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까지	2018	2020	2021	2022	합계
교육· 컨설팅	들 녘						
	논타작물						
시설장비	들 녘						
	논타작물						
사업 다각화	들 녘						
	논타작물						
합계	들 녘						
	논타작물						

가루쌀 확대 및 유지 서약서

○ 경영체명 :

○ 주소 :

○ 대표자 :

○ 생년월일 :

상기 경영체는 가루쌀 재배 확대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가루쌀 재배면적을 '26년까지 150ha 이상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24년) 30ha 이상, (‘25년) 80ha 이상, (‘26년) 150ha 이상
2. 가루쌀을 재배한 면적을 '24년부터 향후 5년 이상 밥쌀용 벼 재배로 회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루쌀을 재배할 것을 약속합니다.
3. 가루쌀 재배 매뉴얼(농진청) 준수(6월말 육묘 및 늦이앙 등) 및 순도관리(3단계 검사), 가루쌀 생산단지에 참여하는 모든 필지는 농작물재해보험 의무 가입(7월말 점검 예정), 종자는 종자원 및 농진원 등에서 보증한 종자만 사용(자가채종종자 사용 금지) 할 것을 약속합니다.

상기 사항의 이행의무가 '24년 가루쌀 생산단지조성사업 보조금 교부조건에 포함되었음을 인지하였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산단지 지정 취소 또는 연장 중지, 보조금 회수 및 시정명령, 교육·컨설팅 지원 중지,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신청 제한, 지자체 사업 연계 지원 중지 등을 수용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법인명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중